

# 독일의 일하는 빈곤층\*

조 성 혜\*\*

## I. 서

최근 유로 존의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독일경제는 거침 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실업률은 6.8%로 통독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2014년부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본격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sup>1)</sup>

이렇게 잘나가는 독일에서 돈을 벌면서도 근로이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과거에는 대다수의 빈곤층<sup>2)</sup>이 실업자나 노년층이었으나, 기간제근로자(befristete Beschäftigung), 시간제근로자(Teilzeitbeschäftigung), 파견근로자(Leiharbeit), 저임금단기간 근로자(Geringfügige Beschäftigung), 미니 잡(Mini Job)<sup>3)</sup> 등의 비정규직(atypische Beschäftigung)이 늘어나면서,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소위 “일하는 빈곤층(working poor)”이 사회의 한 축을 형성하게 되었다.<sup>4)</sup>

문제는 취업기간 중 빈곤한 사람은 실업기간은 물론 노후에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다는

\* 이 글은 한국사회법학회의 사회법 포럼(2013. 11. 22)에서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동국대학교(서울), 법과대학 교수(cho901@dongguk.edu).

- 1) ‘독 경제지문위 “독일 경제 내년 본격 회복”,’ 아시아 투데이 2013. 11. 13,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893219>
- 2) 독일의 빈곤 기준은 독신자의 경우 순 월소득 980유로, 14세 미만의 자녀를 둔 4인 가족의 경우 월 소득 2,058유로이다. Osten und NRW-Städte stark betroffen, Stern.de, 30. Aug. 2013.
- 3) 미니 잡이란 월소득 450유로 미만의 저임금 단기간의 일자리를 말한다.
- 4) 1998년만 해도 시간제근로, 파견근로, 저임금단기간근로, 기간제근로는 7.4%에 불과했으나 2011년에는 그 비율이 38.9%로 올랐다. 이들 중 14.3%가 빈곤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한다. 1인 자영업자의 빈곤율도 10~11%에 이르고 있다. 전일근로자의 빈곤 비율은 1998년부터 2008년 사이 거의 불변으로 3.2%에 머무르고 있다. 비정규직 중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고용형태는 저임금단기간근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약 25%는 세대당 소득원이 복수이고 국가의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것이다.<sup>5)</sup> 임금이 낮다 보니 임금소득에 비례하는 실업급여나 연금도 낮을 수밖에 없고, 저임금 고용과 실업을 반복하다 보니 아예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 또 이들은 소득이 낮다 보니 저축이나 노후대비를 할 여력도 없다.<sup>6)</sup>

이제 독일에서 일하는 빈곤층 문제는 단순히 개인 차원이 아니라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 기본법(Grundgesetz)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국가의 원리(Sozialstaatsprinzip)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생활<sup>7)</sup>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기본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흔들리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일하는 빈곤층이 늘어난 원인은 다양한 각도에서 찾을 수 있겠지만, 가장 자주 거론되는 것이 독일정부의 노동시장정책이다. 특히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하르츠 개혁(Hartz Reform)<sup>8)</sup>이 지목되고 있다. 하르츠 개혁은 2010년 슈뢰더 총리의 아젠다 2010(Agenda 2010)으로 공표되었는데, 주요 골자는 사회보장 급여의 삭감과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적극적인 자활의지의 고취였다.<sup>9)</sup> 일반적으로는 독일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개혁 덕분에 실업률이 줄고, 일자리가 창출되고, 오늘의 호황도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젊어서나 늙어서나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이유로 정부의 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sup>10)</sup>

- 
- 5) Gather, Winfried(2011), Diözesansekretär Katholische Arbeitnehmer-Bewegung Köln(14. 6. 2011), 4.  
 6) 독일정부는 공적 연금 외에 사적 연금에 대한 지원을 통해 노후빈곤을 예방하고자 하나, 일하는 빈곤층은 사적 연금에 가입할 여력조차 없다.  
 7) 여기서 의미하는 인간다운 생활이란 상대적 개념임을 밝혀 둔다.  
 8) “하르츠(Hartz)”란 용어의 유래는 2002. 2. 22.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을 위해 재계, 노동계, 학계, 정계 등 각 분야 1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Hartz Kommission)의 위원장을 폴크스바겐(Volkswagen)사의 노동이사인 페터 하르츠(Peter Hartz)가 맡게 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위원회는 적재적소의 신속한 직업소개, 충분한 소득 보장, 효율적이고 시민친화적인 행정을 통해 4년 내에 400만 명의 실업자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하에 전면적인 노동시장 개혁안을 내놓았다. 2003년부터 2005년까지에 걸쳐 시행된 하르츠 법(1-4)의 내용을 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노동시장의 유연화, 실업의 책임을 개인에게로 이전, 사회보장급여의 대폭적 삭감, 자활의지의 고취 등이라고 할 수 있다.  
 9)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황규성(2008),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방식 변화」, 『노동정책연구』 8(2), pp.151~183; 금재호(2013),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리뷰』 6월호, pp.75~88; 최승호(2012),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식에 대한 고찰」, 『한·독사회과학논총』 22(4), pp.97~130.  
 10) Bündnis 90 Die Grünen(2013), Hartz-Gesetz: Soziale Spaltung auf dem Arbeitsmarkt überwinden, 18. 6. 2013; Zimmer, Matthias(2013), Reform der Hartz-Gesetze muss in der nächsten Legislaturperiode angegnagen werden, CDU 13. 08. 2013.

## Ⅱ. 일하는 빈곤층의 사례

독일이 세계에서 손꼽히는 강대국이라는 사실과는 무관하게 독일의 빈곤층의 일상은 다음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다운 생활과는 거리가 멀다.

### <사례 1>

23세 마리온(Marion)은 독신으로 3년간 소매점 점원 직업교육을 받은 후 프랑크푸르트에서 점원으로 일한다. 그는 나중에 경력자로 인정받아 더 높은 임금을 받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가 받는 월급은 1,200유로이다. 이 급여에서 방 2칸짜리 월세로 매달 700유로를, 대중교통 수단 비용으로 월 78.50유로를 지불하고, 휴대전화, 인터넷 등 통신비와 전기세로 40유로가 나간다. 그리고 매일 먹고 마시고, 의류를 구입하고, 생필품 등을 구입하기 위해 약 11.38유로의 비용을 지불한다. 그는 굶지는 않지만 더 이상의 사치는 누릴 수 없다.

### <사례 2>

백화점에서 주 30시간 일하는 30세의 자비네(Sabine)는 시간당 8유로의 임금을 받는다. 이 급여로부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그가 노후에 받는 연금은 300유로이다.

### <사례 3>

뮌헨 어린이집의 46세의 보육교사 페트라(Petra)는 전일근로를 하고 월 2,200유로를 받는다. 한부모 가정의 가장인 그는 월급이 다소 높은 노인요양시설에서 일하다가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바꾸었다. 그는 19세의 대학생 아들의 학업을 뒷바라지하기 위해 가외로 주말이나 휴일에 아르바이트를 하여 몇백 유로를 더 벌기도 한다. 그가 35년간 현재의 급여를 받으며 연금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노령 시 받는 연금은 많아야 800유로이다.

### <사례 4>

54세 엘케(Elke)는 베를린의 호텔에서 20년 이상 호텔 청소근로자로 일했다. 호텔 측에서 청소를 파견근로자에게 맡길 것임을 알고 실업이 두려워 파견업체로 전직했다. 전일근로임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줄어들어 실업급여 II<sup>11)</sup>를 받는 것보다 적다. 그러나 행정

11) 실업급여 II는 하르츠 4에 의하여 새로이 도입된 기초보장적 성격의 급여로, 사회부조의 원칙에

절차가 복잡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 실업급여 II를 청구하지 않는다.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나듯이 일하는 빈곤층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생필품 외에는 소비를 할 여유가 없다. 백화점 점원, 음식점 아르바이트생, 시간제근로자, 단순사무직의 저임금 전일근로자 등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는 이들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한 의류구입, 외식 등은 자제하고 영화관람, 여행 등의 문화생활은 거의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빠듯하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교류를 하기도 어렵고, 늘 판에 박힌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당장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급급해 가외로 연금에 가입할 여유도 없다. 월세가 높고 물가가 비싼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뮌헨 등의 대도시에서 사는 근로자들의 상황은 더 나쁘다.

2013년 현재 독일에는 취업자의 약 1/5에 해당하는 810만 명의 취업자가 저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다고 한다. 10년 전에 비하면 120만 명이 늘어난 수치이다.

### Ⅲ. 노동시장 개혁에 대한 비판적 시각

“5명의 현인(5 Weisen)”으로 불리는 독일경제자문위원회는 2013. 11. 13. 독일의 아젠다 2010 개혁 조치들이 회석되거나 방향을 바꾸게 되면 앞으로 닥칠 도전은 더욱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독일정부에 지속적인 개혁 추진을 주문했다.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하르츠 개혁이 저임금의 불안정고용을 심화시켜 일하는 빈곤층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따라 수급권자의 자산과 개인의 필요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즉 재산이 일정한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되고 동거 가족의 소득이 너무 높아도 안 된다(예컨대 3인 가족의 경우 1,200유로). 그러므로 수급권자는 노후 대비 민간보험, 통장잔고, 토지 등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실업급여 II”라는 용어가 혼동을 불러일으키기는 하나 실업급여 II가 반드시 실업급여 I을 수급한 이후에야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즉 다른 소득(심지어 실업급여 I도 포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득만으로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부가적으로 지급된다.

실업급여 II의 수급요건은 생계능력이 있는 15세 이상의 요보호자로서 (출생연도에 따라) 65세(67세)에 달하지 않은 자인데, 수급기간은 제한이 없다. 생계능력이 있다 함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하루 3시간 이상 일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요보호자라 함은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어려운 자를 말한다. 실업자와 그 가족,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취업자, 가족을 돌보느라 취업을 할 수 없는 자 등도 수급권자가 될 수 있다.

실업급여 II의 재원은 세금으로 조달된다. 그러므로 수급권자가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일자리에 종사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급여액 역시 종전의 임금소득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선 하르츠 2에서 도입된 미니 잡, 미디 잡(Midi Job)<sup>12)</sup>으로 인하여 정규직(Normalarbeitsverhältnis)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비정규직의 불안정근로로 대체되는 결과를 가져왔다.<sup>13)</sup> 또한 하르츠 4 입법<sup>14)</sup>에서 실업급여(Arbeitslosengeld)와 실업부조(Arbeitslosenhilfe)를 통합하면서<sup>15)</sup> 빈곤층이 늘어나고 사회보장 재정은 더욱 악화되었다. 즉 실업 1년 동안은 소득에 비례하는 실업급여 I<sup>16)</sup>을 수급하나, 그 기간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II를 지급받게 되는데, 실업급여 II는 소득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세법에 의하여 재원이 조달되는 기초보장이기 때문에 수급자가 빈곤의 한계를 넘는 적절한 생활을 유지하기가 곤란하다. 하르츠 4의 최대 희생자는 장기실업자로, 이들의 경우 12개월의 실업급여를 받자마자 실업급여 II의 수급자가 되면서 곧바로 빈곤층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저임금근로에 종사하던 단기실업자 역시 실업급여 I 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워 실업급여 II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실업자에게 기대가능한 일자리의 요건이 엄격해져 실업자로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어떠한 조건의 일자리라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 일자리의 미스매치와 함께 저임금근로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 밖에 장기실업자는 일이 없기 때문에 조기에 연금을 수령하려 하게 되는데 취업기간이 짧다 보니 연금액 역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즉 연금 수령 전 불안정한 일자리에서

12) 미디 잡이란 월소득 850유로 미만의 일자리를 말한다.

13) Hans Böckler Stiftung(2006), Die "Hartz-Reform" und ihre Folgen, 23; Hans Böckler Stiftung(2013), Quote der "Working Poor" gestiegen/Knapp 68 Prozent der Arbeitslosen in Deutschland von Armut bedroht(magazin -auswege- 23. 4. 2013), 1.

14) 하르츠 4 입법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김영미(2013), 『독일 하르츠 개혁에서의 고용증진 관련 법제개혁의 내용과 평가- 하르츠 IV에 의한 고용연계복지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28집, pp.173~217.

15) 실업급여와 실업부조의 통합에 대하여는 Berlinger, Kurt(2004), 『독일 연방고용청(BA) 및 사회복지법전 II(하르츠 특별법 IV) 개혁』, 『국제노동브리프』 2(4), pp.75~79; 황덕순(2008), 『하르츠 개혁에 의한 독일의 고용서비스 개혁: 초기 결과와 재조정』, 『국제노동브리프』 6(7), pp.44~55.

16) 실업급여 I은 실업이 된 자가 실업신고 전 2년간 최소한 12개월간 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근로에 종사했던 자가 연방고용센터에 실업으로 신고한 경우에 지급된다. 실업급여액과 수급기간은 임금, 취업기간 및 연령에 따라 달라진다.

〈실업급여의 수급기간〉

피보험기간(개월)	수급기간(개월)
12	6
16	8
20	10
24	12

실업급여액은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과 실업보험료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보통 한 자녀 이상을 둔 자의 경우 기준임금의 67%, 그밖의 실업자의 경우 60%이다.

일했거나 고용이 중단되었던 사람은 이에 비례하여 연금액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 노후에도 빈곤을 면치 못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하르츠 개혁은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박탈하고 젊어서나 늙어서나 국가의 부조를 받을 수밖에 없는 빈곤층을 양산하고 말았다.

## IV. 독일 노동시장의 취업자 유형과 일하는 빈곤층

### 1. 독일 노동시장의 취업자 유형

독일 노동시장은 아직은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전일근로에 종사하는 정규직이 다수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정규직은 차츰 줄어들고 대신 비정규직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독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으나, 일반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양자를 구분한다.

정규직이라 함은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말한다.<sup>17)</sup>

- 전일근로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
- 사회보험에 의한 보호
- 근로계약 당사 사용자와 근로제공 당사 사용자의 동일성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과 같은 근로를 일컫는다.

- 기간제 근로<sup>18)</sup>
- 시간제 근로<sup>19)</sup>
- 파견근로<sup>20)</sup>

17) Keller, Berndt/Seifert, Hartmut(2011), *Atypische Beschäftigung und soziale Risiken- Entwicklung, Strukturen, Regulierung*, p.8ff.

18) 기간제법상 기간제 근로는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2년(초기에는 3개월)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단체협약으로 연장할 수 있다.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반복적 갱신이 가능하다(기간제법 제 14조). 합리적 사유에 대하여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한다.

19) 연방통계청에 의하면 주당 21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개념이 가장 일반적이다. 한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법(TzBfG)에 의한 시간제 근로란 전일근로자의 근로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는 자, 즉 주당 35시간 미만 일하는 자를 말한다.

20) 파견근로는 대부분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하르츠 개혁에 따라 그 사이 독일 전 업종에서 단체협약의 보호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언뜻 정규직의 요

- 저임금단기간근로<sup>21)</sup>

독일 노동시장의 취업자는 가장 보편적인 정규직·비정규직이라는 기준 외에도 1유로 잡(Ein-Euro-Job)<sup>22)</sup>, 불안정 고용, 사회보험가입의무가 있는 고용, 자영업자, 가족종사자 등 고용형태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다음의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독일 노동시장의 취업자〉

근로자	비정규직	정규직
		기간제근로
		시간제 근로
		파견근로
자영업자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	저임금단기간근로
	1인 자영업자 <sup>23)</sup>	
가족종사자		

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나, 대부분 계약기간이 단기이고 임금 등 근로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속한다.

- 21) 저임금단기간 고용이라 함은 저임금 또는 단기간으로 고용된 근로자로서 통상적으로 수입이 월 450유로(2012년까지는 400유로였다가 2013. 1. 1. 이후 450유로로 상승됨) 미만이거나 주당 15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이 내용은 추후 삭제됨), 일명 미니 잡(Mini Job)이라고도 한다. 하르츠법에 의하면 401~800유로까지를 미디 잡(Midi Job)이라 하는데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률도 비례하여 올라간다.
- 22) 1유로 잡이라 함은 실업급여 II를 받으며 1~2.5유로 일자리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업급여 II는 하르츠 4에 의한 생계능력이 있는 요보호자에 대한 기초보장급여인데, 실업급여 II의 수급요건으로 수급자가 공익적 성격의 부가적 일자리(1유로 잡)에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한 것을 일컬어 일명 “초과비용보상 고용(Arbeitsgelegenheit mit Mehraufwandsentschädigung: AGH-MAE)”이라고도 한다. 즉 수급자가 부가적 일자리에서 일을 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을 보상해 준다는 의미로, 실업급여 II의 기본급여에는 이러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당 1유로에서 2.5유로로 보상을 한다는 것이다. 1유로 잡의 목적은 수급권자의 1차 노동시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데 있다. 수급권자가 부가적 일자리를 거부하면 급여가 최고 30%까지 삭감된다. 1유로 잡으로부터 얻은 소득은 실업급여 II에 산입되지 않는다. 1유로 잡의 일자리는 주당 20시간에서 30시간의 근로로, 통상적인 근로관계에 기초한 것이 아니므로 미니 잡과는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 23) 최근 독일 노동시장에서 1인 자영업자(Solo-Selbständige)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0년과 2011년 사이 40%가 증가해 260만 명이 1인 자영업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자영업자 중 57%가 1인 자영업자라고 한다. 1인 자영업자가 되는 이유를 “사장이 되고 싶다”거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싶다”는 답도 있지만, “더 이상 실업자가 되고 싶지 않다”, “일자리가 없다”, “직장에서 차별받는다”, “다른 사람의 권유였다” 등의 답도 많다. 1인 자영업자의 소득은 매우 낮아 30%

그 밖에 장기간 도급업자를 위해 업무를 수행한 유사자영업자(Scheinselbständige)를 비정규직에 포함시킬 것인가와 관련하여서는 논란이 많다. 연방통계청은 이들의 경우 근로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규직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sup>24)</sup> 다만 유사자영업자의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고 비정규직과 마찬가지로 고용이 불안하므로 비정규직을 논할 때 함께 언급되기도 한다.

## 2. 비정규직 · 불안정고용 · 일하는 빈곤층

일반적으로 일하는 빈곤층이라 하면 우선 비정규직을 떠올린다. 그러나 모든 비정규직이 빈곤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같은 맥락에서 정규직이라고 빈곤에 처할 위험이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일하는 빈곤층을 반드시 비정규직과 동일시할 수는 없다. 다만 일하는 빈곤층의 대부분은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라는 점에서 비정규직을 배제하고 일하는 빈곤층을 논할 수는 없다.

대체로 일하는 빈곤층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 임금이 생계를 보장하지 못한다.
- 사회보장 급여 및 노동법상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부여되지 않는다.
- 안정된 노동시장으로의 편입이 불가능하다.

또한 일하는 빈곤층들의 대부분은 임금이 너무 낮아 추가로 실업급여 II를 받아야만 생활이 가능하다.<sup>25)</sup> 실제로 하르츠 4 이후 많은 근로자들이 급여만으로는 불충분해 실업급여 II를 받는데, 그 중 절반 정도가 전일근로라고 한다.

고용이 불안한 저임금근로자들의 경우 단체협약도 없기 때문에 임금인상을 요구할 근거도 없다.

정규직의 경우 그나마 자신과 그 가족의 생계를 어느 정도 책임질 수 있는 반면 비정규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이 종종 불안정고용(prekäre Beschäftigung)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그러나 양자를 동일시할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불

---

정도는 저임금근로자들의 임금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년 후 생존율이 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자들의 경우 85%가 동일 직장 보유). 독일의 경우 자영업자가 12%이고 그 중 57%가 1인 자영업이라고 한다(유럽의 자영업 평균은 17%이고, 그 중 72%가 1인 자영업자라고 한다). Solo-Selbständigkeit: Freiheit oder Not?, DIW Berlin, Pressemitteilung vom 13. 02. 2013; Solo-Selbständige: Allein und arm, Maryena Sicking, 17. 04. 2013.

24) Wingerter, Christian(2009), Der Wandel der Erwerbsformen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Einkommenssituation Erwerbstätiger, Statistisches Bundesamt · Wirtschaft und Statistik 11-2009, 1082.

25) 다만 저임금이라고 하여 반드시 빈곤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예컨대 복수의 가족구성원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저임금과 빈곤이 일치하지는 않는다.



안정고용은 당사자의 경력 및 가족관계 등에 비추어 빈곤의 위험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반면 비정규직이라 할지라도 직업과 개인적 흥미분야를 적절히 조화하고자 자발적으로 택한 경우는 불안정고용이라고 하기 어렵다.<sup>26)</sup>

그러므로 불안정고용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객관적 및 주관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비정규직이 반드시 불안정고용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다분히 불안정고용의 요인이 잠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 3. 일하는 빈곤층의 분포

저임금근로는 대부분 서비스업에 분포되어 있고 주로 직업훈련생, 청년층, 외국인, 여성<sup>27)</sup> 등이 저임금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수료자, 자격증 소지자, 대학졸업자들이라 할지라도 실업을 한 경우 하르츠 4 이후 저임금근로라도 취업을 해야 하는 상황에 몰리면서 학력, 경력 등을 불문하고 저임금근로자가 늘어나고 있다.<sup>28)</sup>

특히 다음과 같은 직업이 저임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 성	여 성
운전기사, 창고 및 운반근로자, 페인트공, 경비업체 종사자, 도소매업 종사자, 보조인력, 설비기사, 목공, 인테리어 종사자, 화물차 수리공, 상인, 화가, 기계공, 조리사	점원, 청소원, 사무직원, 사회복지사(요양사 등), 간호사, 조리사, 식당주방장, 미용사, 화장품판매원, 도소매업종사자

그 밖에 학자들도 일하는 빈곤층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학력 자영업 종사자도 위험군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건축가, 변호사 또는 기자 등도 최저생활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사무실이나 자동차가 없는 경우도 많았다. 이들 직업군은 주당 평균 근로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는 빈곤층 문제는 특히 파견근로에서 심각하게 나타난다. 2013년 초 파견근로 분

26) Bröring, Manfred/Buschmann, Mirja(2012), Atypisch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in ausgewählten Arbeitsfeldern der Kinder- und Jugendhilfe,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GEW); Wingerter, Christian, a.a.O., 1082; Statistisches Bundesamt, Atypische Beschäftigung.

27) 현재 55%의 여성이 비정규직(시간제근로, 미니 잡 등)에 종사하고 있다. 2003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여성들이 저임금단기간근로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아지면서 여성 정규직도 비례하여 감소하였다. 반면 남성 근로자는 절대다수(84%)가 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데, 2003년에 비하면 3% 감소한 수치이다. 그러한 이유로 빈곤층의 반수 이상이 여성인데, 그 중에서도 65세 이상이 다수라고 한다.

28) Reiner, Sabine(2006), Arm trotz Arbeit? Der gesetzliche Mindestlohn schafft Abhilfe, 12. bundesweiter Kongress Armut und Gesundheit, 1/2.

야 최저임금<sup>29)</sup>을 동독 7.01유로, 서독 7.89유로로 정하여 파견근로자의 상황이 나아지기는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는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평균 20% 정도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sup>30)</sup>

연방고용공단(Bundesagentur für Arbeit)에 의하면 2005년과 2011년 사이 보건 및 청소업종의 경우 파견근로자의 수가 400% 증가해 16,350명을 기록하였다고 한다.

## V.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 논의

독일에서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가장 자주 언급되는 방안이 최저임금법<sup>31)</sup>의 제정이다.<sup>32)</sup> 즉 법정 최저임금을 8.50유로로 정하자는 주장이 가장 유력한데<sup>33)</sup>, 전일근로자의 월급여로 환산하면 1,400~1,500유로이다.

새로 임명된 사민당 소속의 나알레스(Andrea Nahles) 노동부장관은 2017. 1. 1.부터 독일 전역에 걸쳐 8.50유로 미만을 받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sup>34)</sup> 한편 이 금액으로는 독일의 생활비를 충당하기가 어렵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자녀를 1~2명 키우는 가정이 어렵다고 한다.<sup>35)</sup> 사민당은 8.50유로의 최저임금법 제정 제안과 함께 미니

29) 2011. 12. 20. 연방정부는 90만 명의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을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파견근로분야는 최저임금이 도입된 11번째 산업분야로, 최저임금은 노조에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적용된다. 그 밖에 건물청소 및 지붕수리업 등에 종사하는 약 100만 근로자에게도 2012년부터 최저임금이 적용되었다. 2012. 1. 1. 이후 파견근로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은 서독 7.89유로, 동독 7.01유로였는데, 2012. 11. 1.부터 2013. 10. 31.까지는 서독 8.19유로, 동독 7.50유로로 인상되었다. 지붕수리업의 파견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2012년은 11유로 2013년은 11.20유로로 확정되었다. 건물청소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2012년은 임금등급에 따라 7.33~11.33유로, 2013년은 임금등급에 따라 7.56~11.33유로이다. 파견법 제3a조 제2항에 따라 연방정부가 파견근로자 노사연맹이 체결한 최저임금의 구속력 확장을 선언할 경우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는 기업들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단체협약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30) Arm trotz Arbeit, Sonntagsblatt 21. 11. 2013.

31) 최저임금법 도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Bosch, Gerhard/Weinkopf, Claudia(2006), Gesetzliche Mindestlöhne auch in Deutschland?를 참조.

32) 현재 EU의 27개국 중 20개국이 최저임금을 법제화하고 있다. 그 중 서유럽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은 대개 8.80유로 이상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들을 빈곤으로부터 보호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구매력을 높여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그럼으로써 내수시장이 안정화되고 일을 하면서도 빈곤을 면치 못하는 근로자들의 존엄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33) 현실에서 일하는 빈곤층은 평균 6.80유로밖에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국가의 보조금으로 산다고 한다.

34) Nahles verspricht Mindestlohn bis 2017, Frankfurter Allgemeine, 18. 12. 2013.

35) Mindestlohn und BGE: Die wachsende Armut in Deutschland ist besieghar, Bürgerstimme Zeit für

잡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시간, 유급휴가, 병가, 해고기간, 임금 등을 기재한 서면 근로계약 체결 의무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한편 최저임금법 제정 논의와 관련 법정 최저임금의 도입이 고용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sup>36)</sup> 최근 기민당과 사민당 대연정이 최저임금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하여 130명의 경제학 교수들이 반대성명을 냈다.<sup>37)</sup> 법정 최저임금은 단체협약에 의해 노사가 산업별로 자치적으로 임금을 협상해 온 사회정책적 목적에도 반할 뿐더러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할 경우 임금의 지속적 상승을 부추겨 전반적으로 고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실업자와 미숙련자들이 취업의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 1. 노동계의 주장

한편 노동계<sup>38)</sup>는 일하는 빈곤층에 대한 대책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였다.<sup>39)</sup>

- 법정 최저임금을 8.50유로로 올리되 가능하면 속히 10유로로 올릴 것
-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 확장
- 파견근로자에 대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적용
- 파업대체근로로 파견근로자 투입 금지, 하도급을 통한 불안정 저임금근로 금지
- 미니 잡 근로자들에 대한 동일임금 동일근로조건 보장
- 합리적 사유 없는 기간제근로계약의 폐지. 기간제계약의 일체의 합리적 사유의 검토 후 기간제 허용
- 남녀의 임금상 차별 금지
- 노동정책의 목적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둘 것
- 사회적 일자리에 대한 재평가
- 근로자정보보호법 제정

---

Veränderungen, August 13, 2013.

36) Bosch, Gerhard/Weinkopf, Claudia, a.a.O., 4; Reuter Deutschland, 18. 11. 2013; Mindestlohn braucht mehr Regeln, Frankfurter Allgemeine, 10. 12. 2013.

37) Ökonomen fürchten Mindestlohn ohne Sachverstand, Wirtschaft, 19. 12. 2013. 이미 경제석학들은 추계 자문(Herbstgutachten)에서 법정최저임금 도입에 반대한 바 있다.

38) 노동계는 오래 전부터 불안정고용의 확산을 비판했다. 특히 미니 잡을 줄이고 파견근로를 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보장가입의무가 없는 미니 잡이야말로 저임금근로의 온상으로 노후빈곤의 지름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39) ver.di(Vereinte Dienstleistungsgewerkschaft), Niedriglöhne stoppen!

## 2. 조건 없는 기초소득보장

빈곤층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으로 “조건 없는 기초소득보장(Bedingungslose Grundeinkommen)”이 제시되기도 한다.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 예술가나 작가 등과 같이 창조적인 직업종사자 또는 한부모 가정과 같이 종속노동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들의 최저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이다.<sup>40)</sup>

# VI. 시사점

## 1. 독일의 일하는 빈곤층의 원인

하르츠 개혁이 실업자를 줄이기는 했으나 저임금단기간근로자를 양산시키고 일하는 빈곤층 증가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많지 않다.

독일의 일하는 빈곤층 증가의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꼽을 수 있다.

첫째, 날로 심화되는 국경을 초월한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다. 기업은 생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유연화하여 비용이 많이 드는 정규직 대신 비정규직을 사용하려 한다. 이는 독일뿐 아니라 전세계 국가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현실이다.

둘째,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 온 독일정부의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이다. 독일은 1980년대 중반 이후 고질적인 실업률을 낮추고자 노동법의 보호규정을 계속 완화하여 왔고 그러한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된 것이 하르츠 개혁이다.

특히 하르츠 개혁은 어떠한 열악한 근로조건이라도 취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실업자로서는 저임금 일자리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독일정부는 그러한 ‘초강수’로 실업자를 줄이려는 의도였으나 실업자가 줄어든 대신 저임금근로자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빈곤을 면치 못하게 된 것이다. 다만 독일은 최저생활을 하기조차 힘든 저임금근로자들을 그대로 방치하지는 않고 실업급여 II로 지원을 하였으나, 빈곤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실업급여 II 역시 최저생활을 유지할 정도의 수준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일하는 빈곤층은 현재를 살아가기도 빠듯하기에 노후대비를 할 여력도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득과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연금도 적게 받게 되어<sup>41)</sup> 평생

40) Mindestlohn und BGE: Die wachsende Armut in Deutschland ist besieghar, Bürgerstimme Zeit für Veränderungen, August 13, 2013.

41) 독일에서는 연금수급자가 600유로 미만의 기초보장금액을 받는 경우 빈곤으로 간주된다. 독일경제

빈곤을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sup>42)</sup> 연금가입도 본인이 원하면 면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적연금 수급권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런 그들이 민간연금보험<sup>43)</sup>에 별도로 가입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실령 연금에 가입했다라도 장기실업자는 일자리가 없다 보니 조기(대부분 63세)에 연금을 수령하여 연금액도 줄어든다.

한편 일하는 빈곤층이 높은 이유로 세금과 사회보험료의 비율이 높은 데 있다는 분석도 있다. 과거에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충분해서 소득 중 일부를 세금과 사회보험료로 납부한 후 근로능력 또는 근로기회의 상실로 일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사회보험 급여로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이렇게 근로를 할 수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을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데 이의가 없었다. 그러나 일하는 빈곤층이 증가하면서 이러한 시스템이 장기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대두하게 된 것이다.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사회보험료 또는 세금으로 납부하다 보니 일하는 빈곤층은 월급을 받아도 충분한 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 2. 결론

경제가 글로벌화하고 기업이 끝없는 경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현실에서 일하는 빈곤층의 문제는 비단 독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 문명국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고민이다. 그러므로 독일의 하르츠 개혁으로 인한 일하는 빈곤층의 증가가 단순히 최저임금을 도입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법정 최저임금이 오래 전에 도입된 우리나라에서도 일하는 빈곤층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이유로 독일의 일각에서는 최저임금의 도입이 일자리 창출에 반하고 현재 저임금근로에 종사하고 있는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빼앗아 실업률을 높일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sup>44)</sup>

독일의 비정규직 관련 법제는 기간제법이나 파견법이나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심하지

---

연구소(Deutsches Institut der Wirtschaft: DIW)는 2030년 동독의 연금수급자 중 37%가 600유로 이하의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42) OECD 국가 중 근로빈곤층의 연금이 독일처럼 적은 국가는 없다고 한다. 다른 국가는 고소득자들의 경우 연금에서 깎이는 부분도 많은데 독일의 경우 과거의 소득에 비례하여 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간 연금 차이가 매우 크고, 그로 인해 연금 수급 전에 빈곤했던 사람은 고령에도 빈곤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이다.
- 43) 독일정부는 리스터 연금(Riester Rente), 뤼롭연금(Rürup Rente) 등 민간연금보험 가입의 지원을 통한 노후생활보장정책을 시도했으나 근로자들이 민간보험에 가입할 여력이 없다 보니 사실상 큰 의미가 없게 되었다.
- 44) 우리나라에서도 최저임금법에서 제외되는 경비업무 등에 최저임금을 도입하게 될 경우 경비원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일맥상통한다.

않다. 특히 파견법의 경우 파견기간, 파견업종 등의 규제가 완전히 삭제되어<sup>45)</sup> 파견근로자가 임금덤핑의 주범이 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그나마 2013년 초 파견분야에 단체협약에 의한 최저임금이 도입되어 과거보다는 근로조건이 나아지기는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자의 저임금 문제뿐만 아니라 정규직근로자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제한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에 비해 파견법의 규제가 엄격하여 파견근로자의 임금착취 문제가 독일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되지는 않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파견법의 규제를 피하고자 불법사내하도급이 ‘창궐’하여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는 양상만 다르지 비정규직 문제는 독일과 큰 차이가 없다.

더불어 독일에서는 해고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정규직의 해고를 용이하게 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주장이 일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가 특히 심각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귀 기울일 만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해고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주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노동법의 규제완화가 마치 전체 근로자의 기득권 포기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고제한 규정의 완화는 전체 근로자들의 고용을 불안하게 한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에서 근로기준법의 혜택을 받는 층이 주로 정규직근로자라는 점, 정규직이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되는 만큼 비정규직과 실업자의 정규직 진입이 어려워지고 임금격차가 날로 심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규직에 대한 보호의 벽을 낮추고, 그로부터 절감되는 비용을 비정규직, 실업자들의 보호에 사용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가장 가까운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을 낮춰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누어야 할 “파이(pie)”가 같은 상황에서 한쪽의 양보 없이 다른 쪽의 몫이 커지기를 기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독일에서는 하르츠 개혁이 기존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을 줄이고 실업급여 II라는 일종의 사회부조 제도를 도입하여 일하는 빈곤층을 양산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으나, 우리나라에는 그러한 안전망조차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이 최장 8개월인데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국가의 지원에 의지하기가 어렵다. 대부분은 비정규직의 일자리를 찾거나 자영업을 시도하는데 그마저 여의치 않으면 곧바로 장기실업자가 될 수밖에 없다.<sup>46)</sup>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시간이 극도로 짧은 것이다. 다

45) 독일 파견법의 개정에 대해서는 김기선(2010), 「독일 내 파견근로자의 실태와 최근의 논의」, 『노동법 연구』 제29호, pp.177~205.

46) 그 사이 성인 자녀가 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그러나 취업한 자녀들도 언젠가는 독립을 할 것이기 때문에 계속 자녀들에게만 의지하여 살 수도 없다. 그 과정에서 연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된다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는 있으나, 연금액이 적거나 이미 주거용 부동산도 자녀의 혼사비용 목적으로 매각했다면 최저생활을 유지하기조차 어렵다.

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보험료가 비교적 낮고 부동산이라는 최후의 보루가 있어 중산층이 곧바로 노숙자로 되지는 않는다. 문제는 부동산 불패의 신화가 깨지면서 부동산 대출금을 갚지 못한 채 자산가치가 하락하여 빈곤에 치하게 된 “하우스 푸어(House Poor)”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 글의 주제가 “워킹 푸어(Working Poor)”인데다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자세히 논하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이 역모기지 등 사회안전망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일하는 빈곤층과 완전히 무관한 영역이라고 할 수는 없다.

결국 사회보장의 선진국인 독일도 무한경쟁의 글로벌경제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다는 점, 그들이 하르츠 개혁을 통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려 했으나 그로 인한 부작용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은 반면교사로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11]**

### <참고문헌>

- 금재호(2013), 「독일의 노동시장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노동리뷰』 6월호, pp.75~88.
- 김기선(2010), 「독일 내 파견근로의 실태와 최근의 논의」, 『노동법연구』 제29호, pp.177~205.
- 김영미(2013), 「독일 하르츠 개혁에서의 고용증진 관련 법제개혁의 내용과 평가- 하르츠 IV에 의한 고용연계복지법제를 중심으로」, 『노동법논총』, 제28집, pp.173~217.
- 최승호(2012), 「1990년대 중반 이후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화 방식에 대한 고찰」, 『한국사회과학논총』 22(4), pp.97~130.
- 황규성(2008), 「2000년대 독일 노동시장 개혁과 복지국가의 미시적 작동방식 변화」, 『노동정책연구』 8(2), pp.151~183.
- 황덕순(2008), 「하르츠 개혁에 의한 독일의 고용서비스 개혁: 초기 결과와 재조정」, 『국제노동브리프』 6(7), pp.44~55.
- Berlinger, Kurt(2004), 「독일 연방고용청(BA) 및 사회복지법전 II(하르츠 특별법 IV) 개혁」, 『국제노동브리프』 2(4), pp.75~79.
- Bosch, Gerhard/Weinkopf, Claudia(2006), Gesetzliche Mindestlöhne auch in Deutschland?.
- Bröring, Manfred/Buschmann, Mirja(2012), Atypisch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 in ausgewählten Arbeitsfeldern der Kinder- und Jugendhilfe,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GEW).
- Bündnis 90 Die Grünen(2013), Hartz-Gesetz: Soziale Spaltung auf dem Arbeitsmarkt

- überwinden, 18. 6. 2013.
- Gather, Winfried(2011), Diözesansekretär Katholische Arbeitnehmer-Bewegung Köln(14. 6. 2011), 4.
- Hans Böckler Stiftung(2006), Die "Hartz-Reform" und ihre Folgen, 23.
- \_\_\_\_\_ (2013), Quote der "Working Poor" gestiegen/Knapp 68 Prozent der Arbeitslosen in Deutschland von Armut bedroht(magazin-auswege- 23. 4. 2013), 1
- Keller, Berndt/Seifert, Hartmut(2011), Atypische Beschäftigung und soziale Risiken-Entwicklung, Strukturen, Regulierung, pp.8ff.
- Reiner, Sabine(2006), Arm trotz Arbeit? Der gesetzliche Mindestlohn schafft Abhilfe, 12. bundesweiter Kongress Armut und Gesundheit, 1/2.
- Solo-Selbständigkeit: Freiheit oder Not?, DIW Berlin, Pressemitteilung vom 13. 02. 2013;  
Solo-Selbständigkeit: Allein und arm, Maryena Sicking, 17. 04. 2013.
- Wingerter, Christian(2009), Der Wandel der Erwerbsformen und seine Bedeutung für die Einkommenssituation Erwerbstätiger, Statistisches Bundesamt-Wirtschaft und Statistik, 11-2009, 1082.